

(참조)

忠清北道醫療保護審議委員會條例改正條例案

□ 提案理由

의료보호법(법률제4353호, '91. 3. 8) 및 의료보호법시행령(대통령제13461호, '91. 9. 6)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關聯條例를 整備하기 위함.

□ 主要骨子

- 위원회의 위원수를 "5"인에서 "7명"이내로 증원
- 위원의 임기를 "2년"에서 "3년"으로 연장하고 連任도 가능토록 함
- 위원장이외에 부위원장의 신설
- 시·군심의위원회 新設에 따른 道審議委員會의 기능조정
 - 醫療保護基金의 管理, 運營에 관한 事項
 - 시·군의 醫療保護事業의 조정
- ※ 시·군심의위원회의 기능
 - 보호기간의 연장승인
 - 입원기간의 연장승인
 - 타지구에서의 진료승인
 - 대불금의 결손처분

□ 根據法令

- 醫療保護法 제3조
- 의료보호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10조

□ 豫算狀況 : 해당없음